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(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)가 신설('22.1.11.)되면서 건강손상자녀에 미치는 유해인자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 제34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신설(안 제34조의2 및 별표 3의2),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의학적인 근거와 대법원에서 인정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생물학적 유해인자, 약물 유해인자, 화학적 유해인자, 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(별표 1호~4호)하고, 의학적 근거, 산업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규정(별표 5호)을 추가하였으며,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행령 별표3의2에 정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건강손상자녀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) ① 법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
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는 별표 3의2와 같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
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의2]

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(제34조의2제1항 관련)

1. 보건의료시설 또는 감염취약집단시설 종사자에서 노출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바이러스, 기생충, 세균
 - 가. 거대세포바이러스, 단순포진바이러스,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,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, 파보바이러스 B-19, 풍진바이러스, B형 간염 바이러스
 - 나. 톡소플라즈마증
 - 다. 매독
2. 메토트렉세이트, 미소프로스톨, 와파린, 이소트레티노인, 탈리도마이드, 플루오로우라실, 피나스테리드 등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산부에게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약물
3. 화학적 유해인자
 - 가. 납 [CAS 7439-92-1]
 - 나. 니켈 [CAS 7440-02-0]
 - 다. 벤젠 [CAS 71-43-2]
 - 라. 사염화탄소 [CAS 56-23-5]
 - 마. 수은 [CAS 7439-97-6]
 - 바. 스토타드 솔벤트 [CAS 8052-41-3]
 - 사. 스티렌 [CAS 100-42-5]
 - 아. 에틸렌글로콜모노메틸에테르 [CAS 109-86-4]
 - 자. 유기수은 [CAS 115-09-3]
 - 차. 이산화황 [CAS 7446-09-5]
 - 카. 이황화탄소 [CAS 75-15-0]

타. 일산화탄소 [CAS 630-08-0]

파. 카드뮴 [CAS 7440-43-9]

하. 크실렌 [CAS 1330-20-7]

거.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 [CAS 79-94-7]

너. 톨루엔 [CAS 108-88-3]

더. 폴리염화비페닐(PCB) [CAS 11096-82-5], [CAS 12672-29-6]

4. 물리적 유해인자

가. 『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』 제559조제1항에 따른 고열작업에 해당하는 고온

나. 『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』 제57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으로 제574조의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작업에 해당하는 전리방사선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된 유해인자가 아니더라도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,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것과 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유해인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4조의2(건강손상자녀 관련 유 해인자) ① 법 제91조의12에 따 른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는 별표 3의2와 같다.</u> <u>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상 질 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 항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8840